



#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문

## ■ 휴학 안내사항

- 2019년 3월부터 학칙 제19조(휴학)⑥, 제5조(수업연한)에 따라 휴학일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년, 4년제 학과는 4년 이상을 휴학할 수 없습니다.
- 가사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, 휴학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군휴학(휴학연기)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가사휴학 취소시 휴학취소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휴학생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는 휴학연기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도서 미반납자는 도서 반납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. 도서반납 : 07 통합문화관 4층 도서관 ☎ 053)850-8102
-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, 대학 학적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학사 안내(복학안내 등)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 · 학적 문의 : 01 호산관 2층 교무처 ☎ 053) 850-8058

## ■ 비대면 휴학 신청 방법

1. 대학 홈페이지 [학사정보>학사자료>휴학\(연기\)원](#) 다운 후, 작성
2. 소속 학과로 연락하여 휴학(연기)원을 메일 또는 FAX 전송(학과 작성부분은 비워서 보내시면 됩니다.)

## ■ 가사 휴학 후 군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!

-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므로  
⇒ **군휴학을 원한다면 반드시 입영신청 후 휴학 신청!!**

## ■ 학생 예비군 휴학 안내 :

학적변동(휴학)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예비군대로 신고 바랍니다. 예비군 중 보류해소사유(졸업, 휴학, 퇴학 등)가 발생한 후, 그 발생일로부터 법정기일 14일 이내 미신고시 고발 조치되므로 지역예비군대에 연락하여 고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
예비군법 제6조의3(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)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(保留願書)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·퇴직·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중대장(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)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 
 예비군법 제15조(별칙)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.

## ■ 등록

휴학 시, 납부 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 복학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, 자퇴 시, 등록금 반환기준은 최초휴학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.

- 등록 문의 : 01 호산관 1층 교육지원처 ☎ 053) 850-8076, 8079

## ■ 장학

**장학수혜 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 등록 후, 휴학하여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- 장학 문의(입학처) ☎ 053) 850-8057
- 국가장학금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문의 [한국장학재단] ☎ 1599-2000 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

## ■ 학과 전화번호

건물	학과명	전화번호
창의예술관 (02)	호텔외식조리과, 글로벌융합학부	053) 850 -8177
	뷰티디자인과	053) 850 -8173
	공연예술과, 작업치료과, 연기과, 뮤지컬과	053) 850 -8167
진리인문관 (03)	휴먼복지학부 (노인보건복지전공, 청소년상담복지전공, 평생교육복지전공)	053) 850 -8121
과학탐구관 (05)	방사선과, 소방안전관리과	053) 850 -8243
	첨단융합학부, 건설기계과, 건축과, 자동차전공	053) 850 -8219
	물리치료과, 유아교육과	053) 850 -8168
	사회복지과, 병원행정정보과	053) 850 -8176
지혜관 (06)	간호학과	053) 850 -8178